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4. 12(월)

문교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
라. 상정일자 : 2010. 4. 6(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 규 진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전문위원 유 한 경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이유

- 각 시·도교육청 표준정원이 변경 고시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-40호)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증원하기 위함.

제정근거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(공무원의 배치)
-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및 제19조(정원의 규정)
-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 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-40호, 2009. 12. 14)

□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**3,073명**(2,981명→3,073명, 92명 증가)으로 함.
(안 제2조)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은 **당초 2,968명에서 92명 증가한 3,060명**으로 함.
(안 제2조제2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변경고시 함에 따라 2010년 3월 2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됨.
- 시·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시되면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92명 증원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2,981명에서 3,07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직종별 표준정원 증원내역

구 분	직 종 별 정 원					
	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	연구직	정무직
현 행	2,981	1,466	1,506	6	2	1
조 정	3,073	1,514	1,550	6	2	1
증(△)감	92	48	44			-

※ 직급별 정원조정은 규칙개정시 확정예정

- 시·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증원사유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초등학교 12개교, 중학교 6개교, 고등학교 4개교 등 22개학교의 개교가 예정됨에 따라 신설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청의 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인원을 적기에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정종섭, 이명숙 위원

- 정원증원에 따른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향후 사전보고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.
- 금번 정원이 행정실 요원의 증원으로 향후 교무행정의 정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람.

< 답 변 >

○ 기획관리국장 이규진

- 신설학교에 대한 정원으로 향후 사전보고 될 수 있도록 하겠음.
- 교무행정지원은 교육청의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김용근, 이명숙, 최만용, 박창규, 오홍철, 이병규 정종섭 위원
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7명)

7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- 붙임 : 1.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2,981명” 을 “**3,073명**” 으로 하고,
같은 조 제2호 중 “2,968명” 을 “**3,060명**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,981명</u>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「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다.</p> <p>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13명</p> 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: <u>2,968명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3,073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: <u>3,060명</u></p>